|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5)**  법석[2019]7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5)>가 2019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6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4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민법원의 심판 실무와 결부시켜 주주 권익 보호 등 분쟁사건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특수관계자거래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여 회사가 원고로서 회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배주주, 실제지배자,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거래가 정보공시 의무 이행,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승인 등 법률•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주주는 회사법 제1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특수관계자거래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주주는 회사법 제1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의 유효한 결의에 의해 그의 직무가 해지되었고 그가 해지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이사 직무 해지 후 회사와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행정법규와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해지 사유, 잔여임기, 이사의 보수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여부와 합리적인 보상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주주희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한 후 회사는 결의서에 명기된기한 내에 이익배당을 완료하여야 한다. 결의서에 그 기한이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결의서, 정관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1년 내에 이익배당을 완료하여야 한다.   결의서에 명기된 이익배당 기한이 회사 정관에 정해진 기한을 초과한 경우 주주는 회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결의상 해당 기한 관련 규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유한책임회사 주주간의 중대 분규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조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분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분규 해결방식이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일부 주주의 지분 환매; 3. 기타 주주가 일부 주주의 지분 양수; 4. 타인이 일부 주주의 지분 양수; 5. 회사의 감자; 6. 회사의 분할; 7. 분규 해결 및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고 회사의 해산을 피할 수 있는 기타 방식. 8.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후 심리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심리가 종결된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최고인민법원이 과거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五）**  法释〔2019〕7号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五）》已于2019年4月2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6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9年4月29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9年4月28日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结合人民法院审判实践，就股东权益保护等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作出如下规定。  **第一条** 关联交易损害公司利益，原告公司依据公司法第二十一条规定请求控股股东、实际控制人、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赔偿所造成的损失，被告仅以该交易已经履行了信息披露、经股东会或者股东大会同意等法律、行政法规或者公司章程规定的程序为由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公司没有提起诉讼的，符合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一款规定条件的股东，可以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二款、第三款规定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二条** 关联交易合同存在无效或者可撤销情形，公司没有起诉合同相对方的，符合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一款规定条件的股东，可以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二款、第三款规定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三条** 董事任期届满前被股东会或者股东大会有效决议解除职务，其主张解除不发生法律效力的，  人民法院不予支持。  董事职务被解除后，因补偿与公司发生纠纷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据法律、行政法规、公司章程的规定或者合同的约定，综合考虑解除的原因、剩余任期、董事薪酬等因素，确定是否补偿以及补偿的合理数额。  **第四条** 分配利润的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作出后，公司应当在决议载明的时间内完成利润分配。决议没有载明时间的，以公司章程规定的为准。决议、章程中均未规定时间或者时间超过一年的，公司应当自决议作出之日起一年内完成利润分配。  决议中载明的利润分配完成时间超过公司章程规定时间的，股东可以依据公司法第二十二条第二款规定请求人民法院撤销决议中关于该时间的规定。  **第五条** 人民法院审理涉及有限责任公司股东重大分歧案件时，应当注重调解。当事人协商一致以下列方式解决分歧，且不违反法律、行政法规的强制性规定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公司回购部分股东股份；  （二）其他股东受让部分股东股份；  （三）他人受让部分股东股份；  （四）公司减资；  （五）公司分立；  （六）其他能够解决分歧，恢复公司正常经营，避免公司解散的方式。  **第六条** 本规定自2019年4月29日起施行。  本规定施行后尚未终审的案件，适用本规定；本规定施行前已经终审的案件，或者适用审判监督程序再审的案件，不适用本规定。  本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